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20호의4서식] <개정 2024. 7. 31.>

제 호

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

(운영자용)

교육확인
누름도장

교육 이수자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 :)		
이수과정	과정명		이수일자	
차기 교육기간	년 1월 31일 ~ 년 12월 31일			

위의 사람에 대하여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경찰청 로고

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

한국도로교통공단 로고

(주) 상단의 점선 부분에는 금색으로 눌러 찍고,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인쇄용지(특급) 120g/㎡]

(뒤쪽)

유 의 사 항

1.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2.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교육 확인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.
3.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